

#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업자 재정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3일
-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3. 제안이유

- 항공사업자는 이익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신규노선 개설에 소극적이라 6월~1년 정도 안정화 기간 중 항공사업자의 손익 분기점인 60~70% 탑승율 보전을 통한 국제항공노선 취항 유도
-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로 도민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골자

- 항공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(안 제3조)
  - 국제항공노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
  - 공항시설 사용료중 일부 및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지원내용(안 제4조)
  -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신규개발 국제항공 노선의 평균탑승율 및 화물량이 항공 사업자의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 경우에 결손금 또는 공항시설 사용료 일부
  - 지원기준·방법·기간 등은 피지원자와 협의·결정할 수 있음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안을 검토한 바
-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청주국제 공항 활성화와 이용율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안 제4조제2항 재정지원의 기준·방법 및 기간을 도지사가 정하지 않고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유
- 안 제6조 제1항중 “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을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에서 시장·군수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.